

權者의保護) ①特許權자는自己의權利를侵害한者에對하여 그行爲를禁止한 것을請求할 수 있다.

②法院은前項의請求가理由 있다고認定한 때에는侵害한者에對하여 特許權者를保護하는데必要한措置를命할 수 있다.

第一百四十八條 (侵害賠償의請求)

①特許權者는故意 또는重大한過失에依하여自己의特許權을侵害한者에게 하여는损害賠償을請求할 수 있다.

第一百四十九條 (特許權者の信用回復)

①特許權을侵害함으로써 特許權者の신용을失墜하게 한者에對하여는信用을回復하려면必要한措置를命할 수 있다.

第九章 刑則

第一百五十條 (罰則) ①다음各號의

에該當하는者は五年以下の懲役 또는 百萬圓以下の罰金에處한다.

一、特許權을侵害한者

二、特許權을侵害하는物件을輸出入한者

三、出願公告가 있은 후에 그特許에關한權利를侵害한者

②前項의罪는告訴를 기다려서 이를論한다.

第一百五十一條 (同前) 나음各號의

에該當하는者は三年以下の懲役 또는

<p>五十萬圓以下の罰金에處한다.</p> <p>一、特爲의行爲로써 特許를 받았거나 審決또는判決을받은者</p> <p>1-1. 特許로것이 아닌物이나 그物件의 容器、包裝類에 特許標識를 넣어 나特許標識와混同하기 쉬운表示를 한者</p>	<p>三、特許된것이 아닌物件이나 그物件 의容器、包裝類에 特許標識을붙이 거나 또는 特許標識과混同하기 쉬운 表示를한것을販賣 또는 擴布한者</p> <p>四、特許된것이 아닌物件이나 特許된 것이 아닌方法에依하여製作한物件 을製作、使用하게 하기爲하여는 顆粒撒布하기爲하여廣告、看板、 標札類의 그物件이나 方法이 特許毛 것으로表示하거나 그 방법으로 가워운表示를한者</p>
--	---

<p>超過하는損害의額에限하는 賠償의額 을할 수 있다.</p> <p>이特許局 또는 그屬託을받은法院이나 官署에對하여 虚偽의陳述를한 때에는 六月以上五年以下の懲役에處한다.</p> <p>②前項의罪를犯한者가 그事件의查 定、審決 또는 遷定前由本部하는 그項을濫用한자는</p>	<p>第五百五十三條 (偽證罪) ①法律에依 하는 証書證人、鑑定人 또는 通譯人 이特許局 또는 그屬託을받은法院이나 官署에對하여 虚偽의陳述를한 때에는 六月以上五年以下の懲役에處한다.</p> <p>第五百五十四條 (盜賊) 本法에準用 하는 刑事訴訟法(제1171-1172條) 또는 第三百三十九條의規定에依하 여 宜舊를한者が特許局에對하여 虚偽 의陳述을한 때에는 十萬圓以下の過料 에處한다.</p>
---	---

<p>第五百五十五條 (盜賊) 本法에準用 하는 刑事訴訟法(제1171-1172條) 또는 第三百三十九條의規定에依하 여 宜舊를한者が特許局에對하여 虚偽 의陳述을한 때에는 十萬圓以下の過料 에處한다.</p>	<p>第五百五十六條 (不出頭等의義務違反 에對한過料) 特許局으로부터證人、 鑑定人 또는 通譯人으로서 召喚된者가 정 당한事由 없이 召喚에應하지 아니하거나 나 또는 그義務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五萬圓以下の過料에處한다.</p>
--	--

<p>④ (同前) 本法施行當時舊法에依한 特許權의存續期間은舊法에依한 다</p>	<p>⑤ (同前) 本法施行當時舊法에依한 國家再建最高會議의議決로確定된意匠 法을 이에公布한다</p>
--	---

大統領 尹潛善圖

檀紀四千二百九十四年十二月三十一日

内閣首班 宋堯讚

商工部長官 丁來赫

◎法律第九五一条

意匠法

<p>關于本發類其他物件의提出 또는 提示 의命令를받은者가正當한理由 없이 그 命令에應하지 아니한 때에는 五萬圓以 下의過料에處한다.</p>	<p>第五百五十八條 (過料) 非該事件節次法 第二百六條乃至第二百八條의規定은 前三條의過料에對하여 이를準用한다</p>
--	--

결의確定이 있은後再審請求登錄前에
善意로國內에서發明實施事業을 하거
나 또는事業設備를 가진者は 그特許發
明에對하여事業의目的範圍內에서實
施權을 가진다

②第五五五條第二項의規定은前項의
境遇에 이를準用한다

第一百三十四條 (再審에依하여實施權
을喪失한原實施權者의實施權) ①實
施權取得의審決이確定된後再審에依
하여이에相反하는審決의確定이 있는
境遇에는 再審請求登錄前에善意로國
내에서 그發明實施事業을 하거나事業
設備를 가진者は 그發明에對하여原實
施權의範圍에서 實施權을 가진다

②第四十二條第三項 및 第五五五條第
二項의規定은前項의境遇에 이를準用
한다

第一百三十五條 (詐害審決에對한不服
申請) ①第三者가請求人 및 被請求人
과共謀하여 第三者の權利 또는 利益을
侵害할目的으로審決하게 한 것을理由
로하는不服申請에對하여는 再審의規
定을準用한다

②前項의境遇에 있어서는請求人 및 被
請求人을共同被請求人으로 한다

第七章 訴訟

第一百三十六條 (上告管轄等) ①抗告
審判의審決을 받은者가不服이 있을 때
에는 그審決이法에違反된 것을理由

로하는境遇에限하여審決送達을 받은
날부터三十日以内에 大法院에 上告할
수 있다

②前項에規定한上告및 그裁判에對하
여는民事訴訟法의上告및 그裁判에關
한規定을準用한다

③大法院判決에서審決破毀의基本이
된理由는 그事件에對하여特許局을 罷
免한다

第一百三十七條 (被告適格等) ①前條
第一項의上告提起에 있어서는特許局
長을被告로하여야 한다. 但抗告審判
에서請求人 및 被請求人이 있을 때에는
請求人 또는 被請求人을被告로하여야
한다

②上告의提起가 있을 때에는特許局은
遲滯없이 그事件에關한書類를 大法院
에送付하여야 한다

第一百三十八條 (書類의返還) 大法院
에서訴訟節次가完結될 때에는 大法院
은遲滯없이前條第三項의書類를 特許
局에返還하여야 한다

第一百三十九條 (一事不再理의原則)
①特許나第五六條의許可, 特許權의
權利範圍에關한審判 또는 判決이確定
되었을 때에는 누구든지同一事實 및 同
一證據에依하여다시審判을請求하지
못한다

第一百四十條 (審判繫屬中의訴訟節次
의中止) ①審判 또는 抗告審判에 있어
서는民事訴訟 또는刑事訴訟의節次가
完結될 때까지 그審判節次를 中止할 수
있다

②民事訴訟 또는刑事訴訟에 있어서必
要하다고認定될 때에는法院는特許에
關한審決의確定이 있을 때까지 그訴訟
의確定을 中止할 수 있다

③民事訴訟 또는刑事訴訟에 있어서必
要하다고認定될 때에는法院는特許에
關한審決의確定이 있을 때까지 그訴訟
의確定을 中止할 수 있다

第一百四十一條 (審判, 抗告審判 및 上告
의費用) ①審判, 抗告審判 및 上告
에關한費用의負擔은別段의規定이 있
는境遇를 除外하고는 그事件의審決로
써이를 定한다. 이境遇에 있어서는 그
金額도 定할 수 있다

②前項의費用 및代理人의報酬를 定할
때에는 그金額은請求에依하여特許局
장이 이를決定한다

③費用의負擔과金額에關하여必要한
事項은 開敘으로 定한다

第一百四十二條 (費用의豫納命令) 審
判 또는 抗告審判에서는費用要用하는
行爲에對하여 그費用의豫納을命할 수
있다

第一百四十三條 (費用 및 報償에對한債
務名義) 審判, 抗告審判 및 上告에關
한費用과代理人의報酬를 定하는本法
에依한補償金의確定, 決定 또는 審決
의強制執行에關하여는民事訴訟法第
五百十九條第一號의規定에依한債務

을特許局公務員이 이를附與한다

第一百四十四條 (補償金에關한不服의
訴訟) ①第十七條, 第四十四條 및 第五五
條의規定에依한補償金額의通知나決
定 또는審決을 받은者가不服이 있을 때
에는法院에訴訟을提起할 수 있다

②前項의訴訟은通知나決定 또는審決
의送達이 있은 날로부터三十日이經過
한 때에는 이를提起하지 못한다

③前項의期間은 이를不變期間으로 한
다

第一百四十五條 (補償金에關한訴訟의
被告) 前條의訴訟에 있어서는 다음의
者를被告로하여야 한다

一、 第十七條의規定에依한補償金에
對하여는補償金을 支給할官署 또는
出願人

二、 第四十四條의規定에依한補償金
額에對하여는補償金을 支給할官
署, 特許權者 또는 實施權者

三、 第五三條의規定에依한補償金
額에對하여는 實施權者, 特許權者,
實用新案權者 또는 意匠權者

第一百四十六條 (適用의排除) 第百三
十六條乃至第百三十八條의規定은 第
百四十條의訴訟에對하여는 이를適用
하지 아니한다

第八章 特許權者的保護

第一百四十七條 (權利侵害에對한特許